

## 금지된 차별 및 편견에 의한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 행위에 관한 요약

저희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유무/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체중 등을 이유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차별하거나 괴롭힘, 협박, 집단 따돌림이 없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롭힘이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학교 방과 전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학생들은 규율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부합하는 적절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래 간의 성희롱에 관한 불만은 교육감 규정 A-831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직원 및 학생들이 차별로 인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시민권/체류 신분:**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체류 신분 또는 미국 외의 나라의 시민 신분.

**장애:**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장애 또는 장애 내력. "장애"라는 용어는 (1)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 (2) 이런 손상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3) 이런 손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일상 활동에는 스스로를 돌보기,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일하기, 육체 노동 수행 및 학습 등이 포함됩니다. 약품 또는 지원/보조 기기 등의 도움으로도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손상에는: AIDS, 알콜중독, 실명 또는 시각 손상, 양, 귀먹음 또는 청각 손상, 당뇨병, 약물 중독, 심장 질환 및 정신 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족/출신국가:**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출신 국가 또는 민족 고유성. 출신 국가는 여러 가지 인종과 종교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라도 동일 국가 출신일 수 있기 때문에 인종/피부색 또는 종교/신념과 구별됩니다. "출신 국가"라는 개념은 모든 국가 단체의 일원 및 동일한 조상, 문화 유산 또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포함하며 또한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 (성):**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별 (성), 임신 또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상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에는 성 희롱이 포함된다.

"성별"이라는 개념은 또한 성 정체성, 자기 이미지, 외향, 행동 또는 표현이 개인이 태어날 때 규정된 법적인 성별에 따른 전통성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한 사람의 성 정체성, 자기 이미지, 외향, 행동 또는 표현을 포함한다.

**인종/피부색:** 실제의 또는 외견상 인식되는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신념:**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종교 또는 신념 (종교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관련 없는 기본적인 믿음).

**성적 취향:**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적 취향. 성적 취향은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의미한다.

**체중:**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몸무게.